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난호에 이어...

비상!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요령

3. 발생확인시 긴급조치사항

1. 농림부장관의 조치사항

- 1.1 진단결과를 보고 받은 즉시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수급대책반 등으로 구성되는 가금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조치할 사항을 지시한다.
 - 1.1.1 검역원, 시·도 대책본부간의 24시간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 1.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확산방지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2.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공포하고, 살처분 범위 및 예방접종 여부, 방역 인력 동원계획, 소독약 공급계획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2.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2.3 살처분·이동제한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인한 축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2.4 긴급방역예산을 시·도 등에 지원한다.
- 1.3 국무회의 등에 발생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한다.
 - 1.3.1 국무총리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해양수산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축산물수급안정과 관련한 협조 사항을 통보한다.

- 1.4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관련국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통보 및 필요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의뢰를 지시한다.
- 1.4.1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검역원장에게 지시한다.
- 1.4.2 검역원장에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원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 1.4.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신속히 통보하고, 이후 수행하는 병성감정 결과도 통보한다.
- 1.4.4 주요수출국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가금류 및 그 생 산물의 수출검역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킨다.
- 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1.5.1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조치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주요증상 및 이상증상 발견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한다.(축산농가 당부사항 참조).
- 1.5.2 육류소비 위축방지를 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한다.
- 소비자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시식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 살처분·매몰장면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체를 요청한다.
- 1.6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에 따라살처분 범위 및 예방접종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지역 관할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가금류에 대한 방역조치를 지시한다.

2. 검역원장의 조치사항

- 2.1 검역원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실에 종합상황반, 홍보반, 역학조사반, 유통감시반, 정밀진단반, 검역대책반, 행정지원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되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2.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을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 2.2.1 필요한 경우 OIE 조류인플루엔자 국제표준연구소로 시료를 긴급 송부하여 혈청형 등에 대한 확인검사를 의뢰한다.
- 2.2.2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3 현장통제본부에 방역전문가를 파견하여 살처분, 오염·위험·경계지역 범위설정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 2.4 중앙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발생원인, 유입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2.4.1 검역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역학조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다.
- 2.4.2 국내 최초 유입시기, 유입경로 및 발생농장 밖으로의 전파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의 출입자, 출입차량 및 가축이동 상황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추적을 실시한다.
- 2.4.3 국내유입경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 도래하는 야생철새에 대한 예찰계획을 수립, 예찰을 실시한다.
- 2.4.4 유입경로의 추적을 위해 해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검역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

속한 입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5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예방접종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예방약 소요량을 파악하고,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를 확보한다.

2.5.1 예방약 긴급 생산 또는 도입·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소요량을 파악한다.

2.6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강화조치, 밀수방지, 잔반처리, 해외 여행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6.1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2.7 수출검역물의 반송상황 발생에 대비한 검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

2.8 대국민·축산농가 대상 신고 및 방역요령 등 홍보를 강화한다.

3. 시·도지사의 조치사항

3.1 ○○시·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3.2 시장·군수에게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사람·차량·동물 등의 이동통제 및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방역기술을 지원하도록 지시한다.

3.3 사람·차량·가축 및 축산물 등의 출입·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하여 지방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한다.

3.4 지역방송망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의심축 발생시 신고요령 및 방역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한다.

3.5 방역지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및 설치류에 대하여는 살처분 또는 구서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6 오염·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내 이동제한 및 방역실시에 따른 사료·가축분뇨·알·식육·부산물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7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내 가축의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축산물의 수매 등을 실시한다.

3.8 위험지역내 사료공급차량은 고정 배치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사항

4.1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4.2 시·도 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중앙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을 추적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및 방문자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을 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포함)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을 추적하여 해당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 살처분시 역학분석을 위하여 채혈 등 검사시료를 채취한다.

4.3 추가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4 필요한 경우 야생조류(철새, 토끼류 포함)를 포함, 분변·혈액 등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으로 송부한다.

5.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5.1 ○○시·군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상황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현장에는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한다.

5.2 오염지역(500m 이내)·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반경 3~10km)의 방역지역을 설정, 방역지역내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을 명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5.2.1 발생농장 또는 발생지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 발생농장 및 발생지 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실시
- 출입자·출입차량·관련장비의 설치·운용

5.2.2 방역지역내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 이동통제초소 근무자는 11.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에 따라 이동을 통제한다.

5.2.3 해당 가축 및 축산물 등의 불법이동 및 반출 관련자 적발과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한다.

5.2.4 현장통제본부는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대한 살처분·소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발생농장 입구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3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살처분하고, 폐사체 또는 살처분한 가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다. 구체적인 살처분 및 소각·매몰절차는 5.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에 의한다.

- 병원체의 오염우려가 있는 축사, 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처분한다. 소독은 6.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폐기처분시에는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5 방역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지역에 관계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파악하여야 한다.

5.2.6 방역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